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다중이용시설 내 능동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(이하 우수시설)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20855호, 2025.3.25. 공포, 2026.3.26. 시행)됨에 따라, 우수시설 지정·재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우수시설 대상 관리자 교육 및 실내공기질 측정 면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며 그 시행과 원활한 정착을 위한 위탁 조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우수시설 대상 관리자 교육 및 실내공기질 측정 면제(안 제5조 개정)

1) 우수시설 지정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우수시설에 대한 관리자 교육 및 실내공기질 측정을 면제하는 근거를 신설함.

나. 우수시설 지정 기준(안 제10조의2 신설)

1) 행정처분 이력, 실내공기질 기준 유지·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 계획·설비 마련 여부, 간이측정기 설치 등 우수시설 지정을 위한 평가사항의 근거를 마련함.

라. 민간 위탁 조항 신설(안 제14조 개정)

- 1) 우수시설 지정제도 운영 및 라돈 조사·라돈관리계획 수립 등의 기술적·행정적 지원을 실내환경관리센터 및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다. 규제 재검토 사항 정비(안 제15조 개정)

- 1) 비규제인 과태료 처분이 규제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여 법령을 정비함.

마. 과태료 처분 관련 사항 정비(안 별표 개정)

- 1) 우수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 횡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근거를 마련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법 제12조의3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(이하 “우수시설”이라 한다)로 지정받은 시설의 소유자 등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기준)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
1. 최근 4년간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, 법 제14조에 따른 벌칙 및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을 것
2.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기준을 유지·관리하기 위한 시설 운영 계획과 환기·저감 설비를 마련하고 있을 것
3. 「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」와 「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」로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를 설치하여 다음 각 목의 항목을 실시간 측정·관리할 것
 - 가. 이산화탄소(CO₂)
 - 나. 초미세먼지(PM_{2.5})

② 제1항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”에 관한 업무를 법 제12조의3”을 “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2조의5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
2. 법 제11조의7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의 실시

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2조의2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,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”를 “업무를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12조의5에 따라 지정된 실내환경관리센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11조의9에 따른 시·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·행정적 지원
2. 법 제12조의2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
3. 법 제12조의3과 법 제12조의4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·재지정의 신청·접수에 관한 업무와 제도운영을 위한 기술적·행정적 지원

제15조제3호를 삭제한다.

별표 제2호거목 및 너목을 각각 너목 및 더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거목을
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거. 법 제12조의3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 또는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우수 시설 재지정을 거것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	법 제16조제3항제8호의3	100	300	500
--	---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)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(이하 “소유자등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	제5조(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실내공기질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지기준과 법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고,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</u>	2. <u>법 제12조의3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(이하 “우수시설”이라 한다)로 지정받은 시설의 소유자 등</u>
<신설>	제10조의2(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기준)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
	1. <u>최근 4년간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, 법 제14조에 따른 벌칙 및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을 것</u> 2. <u>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기준을 유지·관리하기 위한 시설 운영 계획과 환기·저감 설비를 마련하고 있을 것</u> 3. 「<u>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</u>」와 「<u>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</u>」로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를 설치하여 다음 각 목의 항목을 실시간 측정·관리할 것 가. <u>이산화탄소(CO2)</u> 나. <u>초미세먼지(PM2.5)</u> ② <u>제1항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</u>	
제14조(업무의 위탁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.	제14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
	1. ~ 1의4. (생략) 2. <u>법 제11조의9에 따른 시·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·행정적 지원</u> 3. (생략) ② <u>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법 제1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실내환경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③ <u>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2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u>	1. ~ 1의4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2. (현행 제3호와 같음) ② ----- -----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2조의5----- ----- ----- -----. 1. <u>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</u> 2. <u>법 제11조의7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의 실시</u> ③ ----- ----- 다음 ----- ----- ----- 업무 를 「<u>한국환경공단법</u>」에 따른 <u>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12조의5에 따라 지정된 실내환경관리센터</u> ---.

1. 법 제1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실내환경관리센터 2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<신 설> ④·⑤ (생 략) 제15조(규제의 재검토) 환경부장 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 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(생 략) 2. 삭 제 3. 제16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 료 부과기준: 2017년 1월 1일	1. 법 제11조의9에 따른 시·도 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 한 기술적·행정적 지원 2. 법 제12조의2에 따른 다중이 용시설의 소유자등 및 취약계 층에 대한 지원 3. 법 제12조의3과 법 제12조의 4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·재지 정의 신청·접수에 관한 업무 와 제도운영을 위한 기술적· 행정적 지원 ④·⑤ (현행과 같음) 제15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513